

대전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나1052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0. 9. 8 선고 2019나105212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9. 2. 27 선고 2018가소5227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삼용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정

담당변호사 조상원

변론 종결 2020. 7. 21.

판결 선고 2020. 9. 8.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9. 2. 27. 선고 2018가소 522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5,696,950원 및 그 중 8,034,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30.부터, 7,662,950원에 대하여는 2018. 6. 27.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1,540,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 A 패소부분은 원고 A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실제 거래 없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고들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 A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2015. 12. 26. 760만 원, 2015. 12. 29. 1,334,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원고 B은 2016. 5. 31.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으로 1,540,500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위 각 금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도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8,034,000원(= 760만 원 + 1,334,000원), 원고 B에게 1,540,5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율 증가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허위의 매출자료를 끊어달라고 하여 피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서 위와 같은 금원을 수령한 것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과 피고의 행위가 조세채무를 이겨 회계상 이득을 꾀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하기로 한 것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공매출을 원인으로 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있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원고들과 피고의 약정이 일응 조세포탈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한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들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보이므로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 A에게 8,03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5. 12. 30.부터, 원고 B에게 1,540,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위 금원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6. 6. 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인 2019. 1.

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피고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료 7,662,950원이 더 부과되었는바 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심법원이 인정하지 아니한 원고 A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이경희

판사이태영

판사김선용